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-133호

**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
행정예고**

2021. 3. 30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-133호
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30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아플라톡신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양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플라톡신 M₁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산양유의 아플라톡신 M₁ 기준 신설[안 제2. 3. 5) (3) ②]

- 1)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오염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기준 설정 필요
- 2) 산양유에 아플라톡신 M₁ 기준 신설
- 3) 아플라톡신 M₁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

3. 의견 제출
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

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우편번호 : 28159, 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, 참조 : 식품기준과, 전화 043-719-2417, 팩스 043-719-240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00호

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1년 0월 00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. 3. 5) (3) 중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아플라톡신 M₁

대 상 식 품	기 준($\mu\text{g}/\text{kg}$)
원유	0.50 이하
우유류, 산양유	
조제유류	0.025 이하*
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, 영·유아용 이유식, 영·유아용 특수조제식품	0.025 이하* (유성분 함유식품에 한함)

* 분말제품의 경우 희석하여 섭취하는 형태(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)를 반영하여 기준 적용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(선적일 기준)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														
<p>제1. (생 략)</p> <p>제2.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</p> <p>1) ~ 4) (생 략)</p> <p>5) 오염물질</p> <p>(1) ~ (2) (생 략)</p> <p>(3) 곰팡이독소 기준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아플라톡신 M₁</p>	<p>제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.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</p> <p>1) ~ 4) (현행과 같음)</p> <p>5) 오염물질</p> <p>(1) ~ (2) (현행과 같음)</p> <p>(3) 곰팡이독소 기준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아플라톡신 M₁</p>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대상식품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기 준(μg/kg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조·가공직전의 원유 및 우유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tr> <td>조제유류(영아용 조제유, 성장기용 조제유), 특수용도식품(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, 영·유아용 이유식, 영·아용 특수조제식품) 중 유성분 함유제품</td> <td>0.025 이하 [분말제품의 경우 희석하여 섭취하는 형태(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)를 반영하여 기준 적용]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식품	기 준(μg/kg)	제조·가공직전의 원유 및 우유류	(생 략)	조제유류(영아용 조제유, 성장기용 조제유), 특수용도식품(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, 영·유아용 이유식, 영·아용 특수조제식품) 중 유성분 함유제품	0.025 이하 [분말제품의 경우 희석하여 섭취하는 형태(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)를 반영하여 기준 적용]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대상식품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기 준(μg/kg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원유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우유류, 산양유</td> </tr> <tr> <td>조제유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.025 이하*</td> </tr> <tr> <td>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, 영·유아용 이유식, 영·유아용 특수조제식품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.025 이하* (유성분 함유식품에 한함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식품	기 준(μg/kg)	원유	(현행과 같음)	우유류, 산양유	조제유류	0.025 이하*	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, 영·유아용 이유식, 영·유아용 특수조제식품	0.025 이하* (유성분 함유식품에 한함)
대상식품	기 준(μg/kg)															
제조·가공직전의 원유 및 우유류	(생 략)															
조제유류(영아용 조제유, 성장기용 조제유), 특수용도식품(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, 영·유아용 이유식, 영·아용 특수조제식품) 중 유성분 함유제품	0.025 이하 [분말제품의 경우 희석하여 섭취하는 형태(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)를 반영하여 기준 적용]															
대상식품	기 준(μg/kg)															
원유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
우유류, 산양유																
조제유류	0.025 이하*															
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, 영·유아용 이유식, 영·유아용 특수조제식품	0.025 이하* (유성분 함유식품에 한함)															
<p>③ ~ ⑦ (생 략)</p> <p>(4) ~ (10) (생 략)</p>	<p>* 분말제품의 경우 희석하여 섭취하는 형태(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)를 반영하여 기준 적용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(4) ~ (10)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

현 행	개 정(안)
6) ~ 17) (생 략) 4. (생 략) 제3. ~ 제8. (생 략) [별표 1] ~ [별표 8] (생 략)	6) ~ 17)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제3. ~ 제8. (현행과 같음) [별표 1] ~ [별표 8] (현행과 같음)